

저작권법상 정보제공 청구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하여

| 정경오 |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심의위원_법무법인 린 변호사 |

1. 들어가며

인터넷이 없는 세상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현대 사회에서 인터넷이 우리의 일상을 지배하고 있고, 온라인 구매, 인터넷 बैं킹 등 인터넷을 통해 거의 모든 행위들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렇게 인터넷은 인간생활에 있어 매우 유익한 존재이지만, 인터넷을 통해 명예훼손, 권리침해 등 각종 피해를 입는 경우도 많이 발생한다. 인터넷을 통해 피해를 입는 경우 결국은 사법절차를 통해 피해를 구제받게 되는데, 대표적인 절차가 바로 민사소송이나 형사소송 절차라고 할 수 있다.

민사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인 피고를 특정해야 하고, 형사고소 및 고발을 하기 위해서도 피고소인, 피고발인을 특정해야 한다. 즉, 소송이나 고소·고발 등을 하기 위해서는 이름, 주소, 연락처 등 최소한의 정보를 필요로 한다. 그런데, 인터넷을 통해 피해를 입거나 권리를 침해받은 자가 피해구제를 받기 위해서 막상 소를 제기하거나 고소·고발을 하려고 해도 인터넷을 사용하면서 이용자들이 실명을 사용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고, ID를 부여받아 익명, 가명 등을 사용하기 때문에 상대방을 특정하지 못해 피해 구제를 받는 데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이러한 인터넷에서 이루어지는 각종 침해행위 등으로 인해 권리침해나 재산상 피해를 입은 경우에 그 구제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 이용자정보를 제공하는 제도이다. 이러한 이용자정보를 제공받는 제도에는 「저작권법」(이하 '저작권법'이라 한다)상 '복제·전송자에 대한 정보 제공청구제도'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이라 한다)상 '이용자 정보의 제공청구 제도'¹⁾가 있다.

1) 저작권법상 '복제·전송자에 대한 정보 제공의 청구'와 정보통신망법상 '이용자 정보의 제공청구'는 정보의 제공 청구라는 공통점이 있어 '정보제공 청구'로 표기한다.

2. 저작권법상 정보제공 청구와 정보통신망법상 정보제공 청구

1) 저작권법상 정보제공 청구

가) 개요

저작권법 제103조의3에 따르면, 권리주장자가 민사상의 소 제기 및 형사상의 고소를 위하여 해당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그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가지고 있는 해당 복제·전송자의 성명과 주소 등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제공을 청구하였으나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이를 거절한 경우 권리주장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해당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 대하여 그 정보의 제공을 명령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정보제공 청구가 있으면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해당 복제·전송자의 정보를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고,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정보 제출 명령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정보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그 정보를 청구한 자에게 지체 없이 제공하여야 한다. 해당 복제·전송자의 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해당 정보를 민사상의 소 제기 및 형사상의 고소를 위한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저작권법은 제103조의3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보제공 청구제도 외에 제129조의2에서 동일한 명칭의 정보제공 제도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법원이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의 침해에 관한 소송에서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증거를 수집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른 당사자에 대하여 그가 보유하고 있거나 알고 있는 정보를 제공하도록 명령하는 것으로 '증거보전을 위한 정보제공 제도'이며, 저작권법 제103조의3에서 규정하고 있는 '복제·전송자에 대한 정보제공 제도'와는 구별되어야 할 것이다.

나) 요건 및 절차

(1) 요건

저작권법 제103조의3에서 규정하는 정보제공청구는 첫째, 권리주장자가 민사상의 소 제기 및 형사상의 고소를 목적으로 할 것, 둘째, 권리주장자가 해당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그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가지고 있는 해당 복제·전송자의 성명과 주소 등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제공을 청구하고, 해당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권리주장자의 정보제공청구를 거절하였을 것, 셋째, 권리주장자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해당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 대하여 그 정보 제공을 명령하여 줄 것을 청구할 것을 요건으로 한다.

(가) 권리주장자가 민사상의 소 제기 및 형사상의 고소를 목적으로 할 것

저작권법 제103조의3은 권리주장자가 정보제공청구의 목적을 민사상의 소 제기 및 형사상의 고소로 한정하고 있다.

권리주장자는 저작권법에 있는 제도라는 점에서 저작권 등 권리침해를 이유로 손해배상청구, 침해정지 청구 등의 권리를 행사하는 자 및 형사상 고소를 할 수 있는 자를 의미한다. 저작권법은 형사상 고소만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고소 외에 고발이나 신고, 인지의 경우에도 정보제공청구가 가능한지가 문제인데, 저작권법상 친고죄가 원칙이고, 예외적으로 영

리·상습적인 저작권 침해의 경우에만 비친고죄를 적용하고 있으므로 권리주장자가 고소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만 정보제공청구가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비친고죄가 적용되는 경우인 고발, 신고, 수사기관의 인지의 경우에도 수사가 개시될 수 있지만, 고발인, 신고인, 인지자가 권리주장자가 아니므로 고발, 신고, 수사기관의 인지의 경우에는 그들의 정보제공청구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민사상의 소 제기 외에 분쟁조정절차에도 정보제공청구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논란이 있으나, 민사상의 소 제기 및 형사상 고소는 법원이나 수사기관 등과 같은 공식적인 사법절차를 의미하므로 비공식적인 분쟁해결절차인 분쟁조정 신청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는 제외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필요 최소한의 정보에 대하여 저작권법 제103조의3 제1항은 복제·전송자의 성명과 주소를 규정하고 있고, 저작권법 시행령 제44조의2는 성명(1호), 주소(2호), 해당 복제·전송자의 전화번호·전자우편주소 등 연락처를 열거하고 있다. 따라서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성명, 주소, 연락처(전화번호·전자우편주소 등)만을 제공하여야 하며, 그 이외의 정보제공을 청구할 수 없다.

(나) 권리주장자의 필요 최소한의 정보제공청구에 대해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그 요청을 거절할 것

권리주장자는 먼저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 대하여 복제·전송자의 성명과 주소 등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제공을 청구하고, 해당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권리주장자의 정보제공청구를 거절하여야 한다.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권리주장자의 정보제공청구를 거절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더 이상 정보제공청구절차를 진행할 이유가 없다. 다만, 권리주장자가 요청하는 복제·전송자의 성명, 주소 등은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정보에 해당하는데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정보주체 동의 없이 제3자에게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는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개인정보보호법'이라 한다) 위반이 될 수 있으므로 일반적으로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권리주장자의 요청에 따라 복제·전송자의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는 거의 없고, 대부분 거절할 것으로 보인다.

이 요건은 권리주장자의 필요 최소한의 정보제공청구를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거절하지 아니하고 제공할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여부가 문제되므로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해당 청구를 당연히 거절할 것으로 보인다는 점에서 실제로는 임의적인 제공이 거의 없는 경우라면 불필요한 요건이라 볼 수 있다. 권리주장자의 청구에 대하여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거절이 당연한 점을 고려했을 때 권리주장자가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 대한 정보제공청구를 생각하고 바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정보제공청구를 하는 것이 절차를 축소하는 효과가 있다.

(다) 권리주장자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해당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 대하여 그 정보제공을 명령하여 줄 것을 청구할 것

권리주장자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복제·전송자의 성명, 주소 등 최소한의 정보 청구를 거절한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해당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 대한 정보제공을 명령하여 줄 것을 청구하여야 한다. 정보제공청구는 권리주장자의 청구가 있어야 하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직권으로 정보제공을 명령할 수는 없다.

(2) 절차

① 저작권법 시행령 제40조는 정보제공청구 절차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에 따르면, 권리주장자는 정보제공청구서에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소명자료에는 자신이 그 저작물등의 권리자로 표시된 저작권 등의 등록증 사본 또는 그에 상당하는 자료(1호), 자신의 성명등이나 이명으로서 널리 알려진 것이 표시되어 있는 저작물등의 사본 또는 그에 상당하는 자료(2호) 등이 있다. 다만, 권리주장자가 저작권신탁관리업자이거나 최근 1년 이내에 반복적인 침해행위에 대하여 권리자임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를 이미 제출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요청서만 제출하여도 된다(영 제40조제1항).

권리주장자가 정보제공청구서에 정당한 권리 없이 복제·전송의 중단을 요구한 경우 법 제103조제6항에 따라 손해를 배상하고, 정당한 권리가 없음을 알면서 고의로 복제·전송의 중단을 요구하여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업무를 방해한 경우 법 제137조제1항제6호에 따라 처벌을 받겠다는 취지의 진술서를 첨부하였을 때에는 위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명자료(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명자료(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기 어려운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한다.

② 저작권보호심의회위원회는 법 제103조의3제2항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부터 심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정보 제공 여부를 심의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 내에 심의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1회에 한정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법 제103조의3제2항에 따라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복제·전송자의 정보를 제출하도록 명하는 경우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정보 제공 명령서를 작성하여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정보 제공 명령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정보 제공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해당 정보를 청구인에게 지체 없이 제공하여야 한다. 또한,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제3항에 따라 정보 제공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한 경우 그 사실을 해당 복제·전송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2) 정보통신망법상 정보제공청구

이용자 정보제공 청구제도는 특정한 이용자에 의한 정보의 게재나 유통으로 인하여 사생활 침해 또는 명예훼손 등 권리를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는 자가 민·형사상의 소를 제기하기 위하여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보유하고 있는 해당 이용자의 정보를 제공하도록 청구하는 제도를 말한다.

가) 요건

이용자 정보제공청구를 위해서는 첫째, 특정한 이용자에 의한 정보의 게재나 유통으로 인하여 사생활 침해 또는 명예훼손 등 권리를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는 자일 것, 둘째, 민·형사상의 소를 제기하기 위한 목적일 것, 셋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해당 이용자의 정보를 보유하고 있을 것, 넷째, 침해사실을 소명하여 명예훼손 분쟁조정부에 해당 이용자의 정보를 제공하도록 청구할 것을 요건으로 한다.

(1) 특정한 이용자에 의한 정보의 게재나 유통으로 인하여 사생활 침해 또는 명예훼손 등 권리를 침해당했다고 주장하는 자일 것

정보통신망법은 이용자 정보제공청구의 요건으로 “사생활 침해 또는 명예훼손 등 권리 침해”로 정하고 있는데, 이 경우 “등”에 어떤 권리 침해가 해당하는지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대법원은 『일반적으로 “등”이라는 표현은 그 앞에 구체적으로 열거된 단어와 유사한 것을 포괄하는 의미로 사용되는바, 그럼에도 위 규정 중 “등 타인의 권리”라는 문언에 집착하여 이를 제한 없이 ‘타인의 모든 권리’라고 해석할 경우에는 과연 위 조문이 의미하는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매우 불명확하게 되고, 그 결과 이렇듯 불명확한 정보의 유통을 방지하기 위하여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어느 정도의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지 또한 모호하게 되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지나치게 과중한 부담을 지우게 된다. 이런 점을 고려할 때, 위 법 제44조제1항의 “사생활 침해 또는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는 ‘사생활을 침해하는 정보’나 ‘명예를 훼손하는 정보’ 및 ‘이에 준하는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만을 의미할뿐, 거기에서 더 나아가 ‘타인의 상표권을 침해하는 정보’까지 포함하지는 않는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²⁾ 라고 판시한바 있다.

판례의 취지에 따르면,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2제1항에서 정한 “사생활의 침해 또는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에서 ‘등’은 사생활의 침해 또는 명예훼손에 준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타인의 권리를 상표권 등으로 확대해서는 아니 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권리침해를 주장하는 자는 사생활침해 또는 명예훼손과 이에 준하는 권리침해를 받은 자에 한정하고, 사생활침해 또는 명예훼손과 관련성이 떨어지는 상표권 침해 등과 같은 재산권 침해를 받은 자는 권리침해를 받았다고 주장하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2) 민·형사상의 소를 제기하기 위한 목적일 것

민·형사상의 소를 제기하기 위한 목적과 관련하여 민사상의 소에는 사생활 침해 또는 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이 포함되는 것은 당연하다. 우리나라 민법은 불법행위로 인한 권리구제방법은 금전배상을 원칙으로 하는데, 예외적으로 명예훼손의 경우에는 금전배상에 갈음하여 또는 이와 함께 침해된 명예를 회복하기 위한 원상회복적 구제를 인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을 구하는 소송으로 사죄광고를 구하는 것이 가능한지가 문제되는데, 헌법재판소가 민법 제764조 “명예회복(名譽回復)에 적당한 처분”에 사죄광고(謝罪廣告)를 포함시키는 것은 그에 의한 기본권제한에 있어서 그 선택된 수단이 목적에 적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정도(程度) 또한 과잉하여 비례의 원칙이 정한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 헌법 제37조 제2항에 의하여 정당화될 수 없는 것으로서 헌법 제19조에 위반되는 동시에 헌법상 보장되는 인격권을 침해한다고 결정³⁾ 하였기 때문에 사죄광고는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을 구하는 소송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⁴⁾

형사상 소제기와 관련하여 형사상 소는 검사가 기소를 한 경우를 의미하므로 그 전단계인 고소, 고발이 포함되는지가 문제이다. 형사소송을 규율하는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고소는 범죄로 인한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이고, 고발은 범죄 피해자 아닌 자가 수사기관에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이다. 형사소송에서 수사의 개시의 단서가 고소, 고발이므로 형사상의 소에서 고소, 고발도 포함되어야 하는 것이 타당하다. 즉, 형사상의 소를 제기하기 위한 목적에 고소, 고발이 포함되므로 수사기관에 고소, 고발을 하기 위한 목적도 형사상의 소를 제기하기 위한 목적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다.

2) 대법원 2012. 12. 4. 선고 2010아817 결정

3) 헌법재판소 1991. 4. 1. 선고 89헌마160 결정

4) 최종선(2014), “이용자 정보제공 청구제도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法學』 제55권 제2호 393면

(3)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해당 이용자의 정보를 보유하고 있을 것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해당 이용자의 정보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공할 이용자의 정보가 없으므로 정보제공 청구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해당 이용자의 정보를 보유하고 있더라도 목적 달성, 개인정보 보유 기간 경과로 인해 정보를 파기한 경우에는 해당 이용자의 정보를 제공할 의무가 없다. 따라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민·형사상 소제기를 목적으로 하는 이용자 정보제공청구를 위해 개인정보를 보유할 의무는 없다.

(4) 침해사실을 소명하여 명예훼손 분쟁조정부에 해당 이용자의 정보를 제공하도록 청구할 것

권리침해 주장자는 침해사실을 소명하여 명예훼손 분쟁조정부에 이용자 정보 제공을 청구하여야 한다. 증명은 법원이 다름 있는 사실의 존재에 대하여 합리적 의심이 없는 확신을 얻은 상태 또는 그러한 확신을 심어주기 위한 당사자의 입증활동을 말하고, 소명은 증명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개연성 정도에는 이른 상태 또는 그러한 심증을 심어주기 위한 당사자의 입증활동을 말한다. 따라서 “침해사실을 소명한다”는 의미는 법관 또는 법원에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까지는 이르지 않으나, 일응 확실할 것 같다고 하는 추측을 얻게 하는 정도의 증거를 제시하는 것을 의미한다.

한편, 권리침해 주장자는 침해사실을 소명하여 법 제44조의10에 따른 명예훼손분쟁조정부(이하 “명예훼손분쟁조정부”라 한다)에 이용자의 정보를 제공할 것을 청구하여야 하며, 명예훼손분쟁조정부가 직권으로 이용자의 정보를 제공할 것을 결정하는 것은 아니다. 이용자 정보도 성명, 주소, 그 밖에 민·형사상의 소제기를 위하여 명예훼손분쟁조정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해당 이용자의 연락처 등의 정보에 한정하는 것이지 그 이상의 정보가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나) 절차

해당 이용자의 정보제공을 청구하려는 자(이하 “청구인”이라 한다)는 청구인의 성명·주소·연락처, 제기하려는 소의 종류 및 소로써 구하는 취지 등을 기재한 정보제공청구서를 소명자료와 함께 명예훼손분쟁조정부에 제출하여야 한다.⁵⁾

명예훼손분쟁조정부는 청구인으로부터 정보제공 요청을 받은 경우 해당 이용자의 정보제공 여부를 결정하여 그 결과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명예훼손분쟁조정부가 정보제공을 결정한 경우 해당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이용자정보를 제공해 주도록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이용자정보를 명예훼손분쟁조정부에 제공한 경우 정보를 제공한 사실을 해당 이용자에게 알려야 하고, 이용자정보제공사실 등 관련 자료를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⁶⁾

청구인은 명예훼손분쟁조정부로부터 제공받은 이용자 정보를 민·형사상의 소를 제기하기 위한 목적으로만 사용해야 하고, 제공받은 정보를 다른 용도로 사용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⁷⁾

5)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제32조(정보제공청구의 절차)

① 법 제44조의6제1항에 따라 해당 이용자의 정보제공을 청구하려는 자(이하 “청구인”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정보제공청구서를 소명자료와 함께 명예훼손 분쟁조정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청구인의 성명·주소·연락처(전화번호·전자우편주소 등을 말한다)
2. 제기하려는 소의 종류 및 소로써 구하는 취지
3. 침해된 권리의 유형 및 해당 이용자의 구체적인 권리침해사실

② 명예훼손분쟁조정부는 법 제44조의6제2항에 따라 정보제공 여부를 결정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청구인에게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6)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제33조

7) 정보통신망법 제73조제4호

3) 양 제도의 공통점과 차이점

가) 공통점

(1) 목적

저작권법상 이용자 정보제공청구의 목적은 민사상 소제기와 형사상 고소를 제기하기 위한 것인데, 정보통신망법상 이용자 정보제공청구의 목적은 민·형사상 소제기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그런데, 형사상 소제기는 실질적으로 형사상 고소, 고발을 포함한다고 할 것이므로 결론적으로 저작권법과 정보통신망법의 이용자 정보제공청구의 목적은 동일하다고 볼 수 있다. 한편, 저작권법과 정보통신망법 모두 소제기 목적 외에 분쟁조정신청의 경우에는 이용자 정보공개청구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점은 동일하다.

(2) 정보제공의 범위

저작권법상 정보제공청구와 정보통신망법상 정보제공청구는 민·형사상의 소제기를 목적으로 하는 점, 정보제공청구 대상인 이용자정보가 성명, 주소, 연락처 등 최소한의 정보인 점은 동일하다고 할 수 있다. 즉 저작권법상 정보제공청구와 정보통신망법상 정보제공청구는 소제기 등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만을 그 대상으로 하며 이를 초과하는 정보제공은 허용하지 않는다.

(3) 정보 보유자

저작권법상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이용자가 선택한 저작물등을 그 내용의 수정 없이 이용자가 지정한 지점 사이에서 정보통신망(「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통하여 전달하기 위하여 송신하거나 경로를 지정하거나 연결을 제공하는 자(가목), 이용자들이 정보통신망에 접속하거나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저작물등을 복제·전송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그를 위한 설비를 제공 또는 운영하는 자(나목)를 의미하고,⁸⁾ 정보통신망법상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와 영리를 목적으로 전기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정보를 제공하거나 정보의 제공을 매개하는 자를 말한다. 이용자 정보 보유자가 저작권법은 온라인서비스제공자, 정보통신망법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 서로 다른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를 포함하는 광의의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4) 정보제공의 과정

정보제공의 과정을 살펴보면, 저작권법과 정보통신망법 모두 온라인서비스제공자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청구인에게 직접 이용자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온라인서비스제공자 및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부터 이용자정보를 제공받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나 명예훼손분쟁조정부가 청구인에게 제공한다는 점이 동일하다.

(5) 목적외 사용에 대한 제재

청구인이 제공받은 이용자 정보를 제공받은 목적 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형사처벌을 두고 있는 점은 같지만, 법정형에 있어 저작권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고, 정보통신망법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한다는 차이가 있다.

8) 저작권법 제2조 제30호

나) 차이점

(1) 근거 및 권리주장자

저작권법상 정보제공청구와 정보통신망법상 정보제공청구는 근거법이 다르고, 제도의 목적과 취지가 다르다. 청구인도 저작권법상 정보제공청구는 저작권법상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자인데, 정보통신망법상 정보제공청구는 사생활침해 또는 명예훼손 등 권리침해를 받은 자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이는 정보제공 청구제도를 규정하고 있는 저작권법과 정보통신망법의 목적 및 취지가 달라 근거법이 규율하거나 보장하려는 권리나 보호이익이 다르기 때문이다.

(2) 요건

요건에 있어서도 저작권법은 권리주장자의 정보제공청구에 대하여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거절을 필요로 하는데, 정보통신망법은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의 거절을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따라서 정보통신망법상 정보제공청구는 저작권법상 정보제공청구에 비해 절차가 단순하다.

(3) 정보제공 결정의 법적 성질

한편, 이용자정보제공 결정의 법적 성질과 관련하여 저작권법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제공결정은 행정처분인데 반해,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분쟁조정부는 행정기관이 아니므로 그 결정 또한 행정처분이 아니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이는 정보제공의 결정을 하는 주체가 저작권법상 이용자 정보제공 결정의 경우에는 행정기관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인데 반해, 정보통신망법상 이용자 정보제공 결정의 경우에는 행정기관이 아닌 명예훼손분쟁조정부라는 점에서 차이가 발생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다) 소결

저작권법상 복제·전송자의 정보제공청구와 정보통신망법상 이용자정보제공청구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정리하면 아래 표와 같다.

구분	저작권법상 정보제공청구	정보통신망법상 정보제공청구
요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권리주장자가 민사상의 소 제기 및 형사상의 고소를 목적으로 할 것 ② 권리주장자가 해당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그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가지고 있는 해당 복제·전송자의 성명과 주소 등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 제공을 요청하고, 해당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권리주장자의 정보 제공 요청을 거절하였을 것 ③ 권리주장자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해당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 대하여 그 정보 제공을 명령하여 줄 것을 청구할 것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특정한 이용자에 의한 정보의 게재나 유통으로 인하여 사생활 침해 또는 명예훼손 등 권리를 침해했다고 주장하는 자일 것 ② 민·형사상의 소를 제기하기 위한 목적일 것 ③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해당 이용자의 정보를 보유하고 있을 것 ④ 침해사실을 소명하여 명예훼손 분쟁조정부에 해당 이용자의 정보(민·형사상의 소를 제기하기 위한 성명·주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최소한의 정보를 말한다)를 제공하도록 청구할 것

청구인	권리주장자	권리침해 주장자
청구상대방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명예훼손분쟁조정부
청구 목적	민사상의 소제기 및 형사상 고소 분쟁조정신청의 경우에는 불인정	민·형사상 소제기(형사고소 포함) 분쟁조정신청의 경우에는 불인정
정보의 범위	성명, 주소	성명, 주소
	해당 복제·전송자의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등 연락처	그 밖에 민·형사상의 소제기를 위하여 명예훼손 분쟁조정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해당 이용자의 연락처 등의 정보
정보보관자	온라인서비스제공자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정보제공절차	청구인→문체부장관→온라인서비스제공자 →문체부장관→청구인	청구인→분쟁조정부→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분쟁조정부→청구인
정보제공 결정의 성질	문체부장관의 제공결정 : 행정처분	분쟁조정부의 제공결정 : 행정처분 아님
목적외 사용에 대한 제재	저작권법 제136조제2항제3호의2 3년 이하 징역/5천만원 이하 벌금	정보통신망법 제73조제4호 2년 이하 징역/2천만원 이하 벌금

4) 문제점 및 개선방안⁹⁾

가) 분쟁조정절차에서 정보제공 청구제도 인정

정보제공청구는 저작권법상 권리침해를 받은 자가 민·형사상 소제기를 목적으로 인터넷상 실명을 사용하지 않는 상대방을 특정해야 하는 경우에 인정되는 매우 편리한 제도라고 할 것이다.

다만, 정보제공 청구제도가 인정되는 범위가 민·형사상 소제기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 한정되고 있어 당사자 간 자율적인 분쟁해결을 목적으로 하는 분쟁조정기구에 조정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인정되지 않는다는 문제가 있다. 당사자 간 자율적인 분쟁해결이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법률상 행정기관이나 공공기관에 설치되는 분쟁조정기구의 경우 당사자 간 분쟁해결을 위해서는 상대방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분쟁조정 신청의 경우에도 정보제공청구를 할 수 있도록 인정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나) 소제기 전 정보제공에서 소제기 후 정보제공으로 전환

정보제공 절차에 따르면, 온라인서비스제공자로부터 복제·전송자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그 정보를 다시 청구인에게 제공한다. 그리고 복제·전송자의 정보를 제공받은 청구인이 실제 민·형사상 소제기를 위하여 그 정보를 사용하였는지 여부 등 사후관리에 대해서는 아무런 절차를 두고 있지 않다.

즉, 민·형사상 소제기를 하기 위해 사전적으로 정보제공청구를 하는 경우 정보를 제공받은 청구인이 실제로 민·형사상 소제기를 했는지에 대해 사후적으로 보고하는 절차도 없고, 문화체육관광부 공무원이 이를 확인하는 절차도 없어 사후관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물론 제공받은 정보를 소제기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형사처벌 규정을 두고

9) 문제점 및 개선방안은 저작권법과 정보통신망법상 정보제공청구에 모두 적용되는 것이지만, 여기에서는 저작권법상 정보제공청구로 제한한다.

있지만 사적 복수를 위해 정보를 제공받은 경우 사적 복수가 행해진 이후의 형사처벌은 의미가 없다는 점에서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다.

첫째, 정보를 제공받은 청구자가 일정 기간 내에 소를 제기하고 이를 보고하도록 하거나 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소제기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는 방안이다.

둘째, 정보제공청구는 소제기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를 위해 마련된 제도이므로 소제기를 하고 소제기 접수증을 첨부하여 정보제공청구를 하도록 하거나, 소제기 후 피고가 특정되지 않는 경우 재판부는 보정명령을 내리게 되는데 이러한 보정명령서를 첨부하여 정보제공청구를 하는 방안이 있다.

첫째 방안은 청구자에게 일정한 기간 내에 고소를 하거나 소를 제기할 것을 강요한다는 점에서 적절하지 아니하다. 둘째 방안에 따라 소제기 접수증, 보정명령서를 첨부하고 정보제공청구를 하는 경우, 사전 청구에 의한 소제기 강요나 사적 복수 등의 문제를 해소한다는 장점이 있으나, 보정명령 기간이 매우 짧아 법원 및 검찰에서 보정명령 기간을 연장해야 하는 문제가 있다. 법원과의 협의나 민사소송법 개정을 통해 보정명령 기간을 연장하고 정보제공청구 절차에서 기간을 단축한다면 개선이 불가할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다)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거절

현행 저작권법상 정보제공 청구제도는 권리주장자의 정보제공청구 시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청구 거절을 요건으로 하고 있다. 그런데, 복제·전송자의 성명, 주소, 연락처 등은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정보에 해당하므로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또는 법률상의 특별한 규정 없이 단순히 권리주장자의 정보제공청구만으로 복제·전송자의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는 없다. 즉, 개인정보보호법상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저작권법 제103조의3 제1항을 근거로 복제·전송자의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는 없고,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임의로 복제·전송자의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처벌될 수도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위험성으로 인해 권리주장자의 정보제공청구에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복제·전송자의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는 사실상 없다고 보아도 무방하므로 정보제공청구에 굳이 이 요건이 있을 필요는 없다고 할 것이다.

이미 유사한 정보통신망법상 정보제공청구에서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거절을 요건으로 하고 있지 아니하고, 개인정보보호법상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임의적인 제공을 기대할 수도 없으므로 삭제하는 것이 타당하다.

3. 맺음말

저작권법상 정보제공청구와 정보통신망법상 정보제공청구의 비교를 통해 정보제공 청구제도의 문제점을 살펴보았다. 저작권법상 정보제공 청구제도는 저작권 관련된 분쟁해결을 위해 마련된 제도이므로 이러한 분쟁해결절차에서 분쟁조정절차를 제외할 이유는 없다고 보여지므로 민사상 소제기 및 형사상 고소 외에 분쟁조정 신청도 포함할 필요가 있다.

또한, 개인정보보호법상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권리주장자의 정보제공청구에 응하는 것은 불가하므로 이는 정보제공청구 요건에서 삭제하는 것이 타당하다.

현행 정보제공 청구제도는 정보를 제공받은 이후 실제 민사상 소제기 및 형사상 고소가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사후관리가 전무하고 사적 복수와 같이 목적외의 용도로 사용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먼저 소제기, 형사 고소 및 분쟁조정 신청을 하고 소제기 접수증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정보제공청구를 하는 방안 도입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김병일(2022), “저작권법상 복제·전송자에 관한 정보제공청구 제도의 개선방안 연구”, 『계간 저작권』, 2022 여름호, 한국저작권위원회.

최종선(2014), “이용자 정보제공 청구제도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法學』 제55권 제2호,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대법원 2012. 12.4. 선고 2010아817 결정.

헌법재판소 1991. 4. 1. 선고 89헌마160 결정.

• 본 내용은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심의위원의 개인적 견해로, 한국저작권보호원의 공식적인 의견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